

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“소방전문 의료기관”이란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(소방전문치료센터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

안 제5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 제4의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안 제8조의2제1호 중 “소방공무원 및 그 가족의 국내·외 견학”을 “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·포상·문화유적지 시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, 제7호, 제8호를 삭제하면서 제5호와 제6호를 각각 제4호와 제5호로 하고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.

안 제8조의3제3항 중 “관련 기관”과 “관련 기관 등”을 각각 “제8조 제5항의 소방협력병원 등”으로 한다.

안 제12조제4항 중 “위촉하는”을 “임명 또는 위촉하는”으로 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	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“소방전문의료기관”이란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~ 6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7. “소방전문 의료기관”이란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(소방전문치료센터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</p>
<p>제5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·시행)</p> <p>① 시장은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(이하 “집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	<p>제5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·시행)</p> <p>① 시장은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 제8조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4의2.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p> <p>5. ----- ----- (현행과 같음) ----- ----- -----</p>	<p>제5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·시행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(개정안과 같음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----- (개정안과 같음)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4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5.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p> <p>6.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5.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	<p><u>제8조의2(후생복지사업의 지원)</u>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후생복</p>	<p>제8조의2(후생복지사업의 지원)</p> <p>-----</p>

	<p>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<u>공상, 모범·우수 소방공무원 및 그 가족의 국내·외 견학</u></p> <p>2.~3. (생략)</p> <p>4. <u>순직 소방공무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원</u></p> <p>5.~6. (생략)</p> <p>7. <u>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사업 지원</u></p> <p>8. <u>순직 소방공무원 유족의 건강검진 및 자녀 장학금 지원</u></p> <p>9.~12. (생략)</p>	<p>------(개정안과 같음)----- -----.</p> <p>1. -----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·포상·문화유적지 시찰</p> <p>2.~3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4.~5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6.~9.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<신 설></p>	<p>제8조의3(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<u>시장은 소방전문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에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,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<u>시장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소방전문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8조의3(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) ① ~ 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 제8조제5항의 소방협력병원 등----- ----- -----..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제8조제5항의 소방협력병원 등 -----.</p>
<p><신 설></p>	<p>제12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심의위원회)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<u>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제도를 주관하는 담당 과장으로 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</u>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⑤ ~ ⑩ (생략)</p>	<p>제12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심의위원회)</p> <p>① ~ 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 임명 또는 위촉하는----- -----.</p> <p>1. ~ 4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⑤ ~ ⑩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“소방전문 의료기관”이란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(소방전문치료센터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증진”을 “증진, 정신건강증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예방에”를 “예방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시장은 소방공무원이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시장은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 제8

조”를 “시장은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 제8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6조제1항 중 “현황”을 “현황, 정신건강”으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지원)”을 “(소방공무원 보건안전)”으로 한다.

제8조의2, 제8조의3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후생복지사업의 지원)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공상, 모범·우수 소방공무원 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·포상·문화유적지 시찰
2. 생활이 어려운 소방공무원 격려금 지급
3.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·행사비·물품구입비 지원
4.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 요양을 하는 경우 특별위로금 지급
5. 무주택 소방공무원 주택 전세자금 융자

6.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
7. 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
8. 소방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지원
9.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8조의3(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)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정신건강 상담·검사·진료비용 지원
2. 정신질환 예방·치료·재활 프로그램 운영
3. 정신건강 관련 교육·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
4. 심리지원단 구성 및 운영
5. 그 밖에 시장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소방전문의료기관 및 제8조제5항의 소방협력병원 등에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,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소방전문의료기관 및 제8조제5항의 소방협력병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12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심의위원회) ①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,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제5조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심의
2. 제8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
3. 제8조의2에 따른 소방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
4. 제8조의3에 따른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

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소방공무원의 소속별 균형과 성별간 균형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제도를 주관하는 담당 과장으로 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또는 소방령
2. 공무원단체(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조, 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직장협회를 말한다)에서 추천하는 공무원

3. 민간기업의 후생복지 담당 임직원

4.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⑥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.

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 담당 팀장이 된다.

⑩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6. 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	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“소방전문 의료기관”이란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(소방전문치료 센터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</u></p>
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(생 략)</p> <p>②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④·⑤ 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	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증진, 정신건강증진-----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 예방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-----</p> 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시장은 소방공무원이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</p>
<p>제5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(이하 “집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	<p>제5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 제8조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-----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</p>

5.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6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8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지원) ① ~ ⑥ (생략)

<신설>

한 사항

6. -----(현행과 같음)-----

제6조(실태조사) ① -----
--- 현황, 정신건강-----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8조의2(후생복지사업의 지원)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공상, 모범·우수 소방공무원 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·포상·문화유적지 시찰
2. 생활이 어려운 소방공무원 격려금 지급
3.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·행사비·물품구입비 지원
4.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 요양을 하는 경우 특별위로금 지급
5. 무주택 소방공무원 주택 전세자금 융자
6.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친화프로그램 운영
7. 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
8. 소방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지원
9.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<신설>

제8조의3(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)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정신건강 상담·검사·진료비용 지원
2. 정신질환 예방·치료·재활 프로그램 운영
3. 정신건강 관련 교육·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

그럼 운영

4. 심리지원단 구성 및 운영

5. 그 밖에 시장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소방전문의료기관 및 제8조제5항의 소방협력병원 등에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,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소방전문의료기관 및 제8조제5항의 소방협력병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12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심의위원회)

①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,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제5조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심의
2. 제8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
3. 제8조의2에 따른 소방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
4. 제8조의3에 따른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

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소방공무원의 소속별 균형과 성별간 균형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제도를 주관하는 담당 과장으로 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또는 소방령
 2. 공무원단체(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조, 「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직장협회를 말한다)에서 추천하는 공무원
 3. 민간기업의 후생복지 담당 임직원
 4.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⑥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.
 -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 담당 팀장이 된다.
 - ⑩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